보도시점 (전매체) 2. 27.(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1개월로 완화,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②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를 확대하였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③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및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하여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휴면조합 지정요건 : (기존) 고유사업 1년 이상 미시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최저발기인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경과 → (추가)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되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기업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4-7444)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상진 (044-204-7449) 목허균 (044-204-7432)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구자윤 (044-204-7859) 김지은 (044-204-78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예상 질의 답변**

Q. 법령 제, 개정을 위해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법령 체계

A. 1.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733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2.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기조합의 법령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Q. 법령 제·개정 및 제도 도입·변경 등 주요 경과

A. 1.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및 맞춤형 인재 영입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2.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자격을 3개월 이상 납입자로 한정함으로써 긴급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기 대출 곤란하여 대출자격을 3개월→1개월로 완화

3. 폐업 단계의 한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재난·사고 등 긴급 위기 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사유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4. 협동조합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기존 고유사업 1년 이상 미시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최저 발기인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경과에서 이사장 1년 이상 공석,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를 추가

Q. 법령 제·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는?

A.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고,

2.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 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3.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긴급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기 대출이 가능

4.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노란우산)을 활용하는 등 긴급한 경영 자금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Q.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는 자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의 부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상근직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6.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임명하려는 해당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교육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① (생 략)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3. (생 략)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1개월 -------- 2.·3. (현행과 같음)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만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 설>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60세 ---------- ---------- ---------- ---------- ----------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

	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 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 설>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①	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①

법 제1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사장(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신 설>	5.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② (생 략)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제15호------- ---------- ---------- ---